

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2년 12월 23일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결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1. 7. 평창군수(지역도시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02. 12월 20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00회 평창군 정례회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2년 12월 23일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지역도시과장 탁현창)

가. 제안이유

-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(안 제2조)
- 위원회구성 (안 제3조)
-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 (안 제8조)
- 옥외광고업의 신고 (안 제10조)
- 수수료 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강원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대상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대상, 방법등 요건과 위원회 심의사항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광고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도 검사절차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.

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요비용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

○ 제정되는 본조례안은 강원도의 조례와 강원도의 준칙을 참고하였으며 수수료금액등은 도내 시·군의 기준을 감안한 것으로 법령의 형식, 자구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○ 도로변 광고물설치가 금지되어 광고효과가 떨어진다는 민원있는데 대처방안은?	○ 접도구역 5m내에서만 제안을 두고 있어 광고효과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봄.
○ 도로변 광고물의 관리부서는?	○ 규모에 따라 읍·면, 군에서 관리함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1부.